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7166
결재일자	2016.2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복지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백지훈	김기란	이만형	02/22 박형중		
협 조					

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

2016. 2.

교육문화복지국
어르신복지과

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계획

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예산 등 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도모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I

운영근거

■ 장애인복지법 제54조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II

운영현황

■ 센터현황

센터명	센터 현황			비고
	센터장	주소	회원수	
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	이원교	보문로 134 2층	100명	
미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	신강섭	종암로 34길 15-10	150명	
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	서기원	동소문로 3길 36 타운힐 2층	110명	

■ 운영기간 : 2016. 1. 1 ~ 12. 31

Ⅲ

활동사업

■ 자립생활센터 공동사업

- 동료상담
- 자립생활프로그램
-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
-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

■ 센터별 사업

-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
 - 중증장애인 사진여가활동 지원사업(구정참여사업)
-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
 -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축제 : 웹툰 공모전 및 영화제
-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
 - 중증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(구정참여사업)

V

예산

■ 2016년 보조금 : 108,000천원 (구비100%)

(단위:천원)

	총액	인건비	임대료	운영비	사업비	비고
2016년	108,000	54,000 (증 6,000)	42,000	6,000	6,000 (증 6,000)	2015년 대비 (증 12,000천원)
2015년	9,600	48,000	42,000	6,000	-	

■ 2016년 보조금 증액 현황

- 인건비 : 2개센터(판, 미래) 인건비가 성북센터에 비해 낮게 예산편성
(2015년 15,000천원 → 18,000천원)으로 동일하게 편성

- 사업비 : 2개센터(판, 미래) 사업비를 예산편성
(센터별 각 3,000천원 배정하여 무장애도시 성북만들기 관련
인식개선 등 개별사업 지원)

■ 센터별 지원 현황

-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: 42,000천원

항 목	산출내역	금 액
인건비	1,500천원 × 12월	18,000천원
임대료	1,500천원 × 12월	18,000천원
운영비	500천원 × 12월	6,000천원
합 계		42,000천원

-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: 33,000천원

항 목	산출내역	금 액
인건비	1,500천원 × 12월	18,000천원
임대료	1,000천원 × 12월	12,000천원
인식개선 사업비(신규)	3,000천원 × 1회	3,000천원
합 계		33,000천원

-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: 33,000천원

항 목	산출내역	금 액
인건비	1,500천원 × 12월	18,000천원
임대료	1,000천원 × 12월	12,000천원
인식개선 사업비(신규)	3,000천원 × 1회	3,000천원
합 계		33,000천원

- 예산과목 :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운영, 장애인편의시설, 장애인편의
시설 지원센터운영, 민간이전,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

■ 예산관리

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을 준용
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
관한 법령 등을 준용

VI

행정사항

■ 협약체결(구 - 센터)

- 구 -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(별첨)

■ 지도감독

- 구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련 업무에 대해 연2회 지도점검 실시

■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(센터 → 구)

- 실적 및 정산서를 다음 분기 10일까지 제출

붙임 :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약서 1부. 끝.